

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2-2
----------	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조례 제2679호(시행 2021. 9. 29.) 개정과 관련하여 구 조례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보호가 문제되어 그들의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고자 소급적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함(안
조례 제267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)

- 1) 현행: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2) 변경: 제20조의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3항
- 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(3) 본문
- 3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1. 11. 17.~12. 7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267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제20조의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발전 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부칙(조례 제2679호 시행 2021.9.29.)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부칙(조례 제2679호 시행 2021.9.29.)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제20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